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6609)/전송(02)797-8176
정책국 국장 이병인(6552) **정책팀장** 박우민(6543) 팀원 박웅비(6609) E-mail : pwbkma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89 - 08388호
시행일자 2026. 10. 26.
수 신 수신처 참조
참 조
제 목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국방부 공고 제2026-469(2026. 10. 15.)

3. 국방부에서는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,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국방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개정이유 :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,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신질환 중 현역·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,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(안 [별표 3] 질병·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, 96, 97, 98, 99, 100, 101, 102의2, 102의3, 104의2호)
- 군 복무 수행능력 기반 안과 관련 판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 (안 [별표 3] 질병·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87호)
- 병역판정이 어려운 희귀질환 등의 판정기준 신설(안 [별표 3] 질병·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1의2, 88의2호)

다. 의견제출 기한 : 2026. 11. 24.(화)

라. 의견제출 방법

1) 제출처 : 국방부 보건정책과
2) 제출 방법
- 일반우편 : (우)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
- 전자우편 : rnwjdaud@korea.kr
- 팩스 : 02-748-6659
3) 문의처 : 국방부 보건정책과(02-748-6656)

붙임 :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 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, 대한공공의학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